

##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CCTV 설치 및 운영 행정예고

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의 CCTV 설치 및 운영함에 있어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23조 및 제25조,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의거,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행정예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관리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1년 6월 10일

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장

1. 행정예고명 :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CCTV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의견수렴
2. 시 행 자 :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관리팀
3. 공고기간 : 2021. 6. 10.(목) ~ 6. 24.(목)
4. 의견제출 : 2021. 6. 10.(목) ~ 6. 24.(목)
5. 공고방법 :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홈페이지

(<https://www.spo.go.kr/site/pyeongtaek/main.do>)

6. 설치장소 :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청사 내부

### 7. 의견제출

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붙임과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평택지청 관리팀으로 방문,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여부와 그 이유)

나.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), 주소, 생년월일, 전화번호 등

다. 제출처: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관리팀

라. 제출방법

- 우편 :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40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관리팀 (우) 17848
- 팩스: 031-8053-4556

마.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

바. 문의처: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관리팀 담당자(031-8053-4538)

[붙임]

## 의견제출서

※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의견제출인	성명	
	주소	전화번호

의견제출 내용	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	
	당사자	성명(명칭)
		주소  (전화번호: )
	의견	
기타		

「행정절차법」 제27조제1항(제31조제3항)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의견제출인

(서명 또는 인)

귀하

### 유의사항

-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
-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.
-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